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3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서천호·서명옥·김상욱

김태호 • 박수영 • 정성국

김용태 · 이만희 · 박충권

백종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예산·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예산· 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 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 및 제4 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예산·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부의 책무) ①・② (생	제3조(정부의 책무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
	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
	•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
	<u>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
	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의2
	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
	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
	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
	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
	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
	<u>하여야 한다.</u>